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설치및기금·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2002 - 35
----------	-----------

제출년월일 : 2002.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과
-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음

주요골자

가. 여성정책발전위원회

-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여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둠. (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안 제5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의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안 제6조)
-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나. 여성발전기금

- 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함.(안 제14조)
-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사용함.(안제15조)
-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출납폐쇄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의회에 제출 (안 제17조)

개정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설치및기금·운용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3조(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여성발전기금

제13조(설치) ①군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5조(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운용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